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41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이정현 · 박홍배 · 강준현

김 현 · 손명수 · 이주희

최민희 · 허성무 · 김우영

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업무지시·감독권이 불명확하여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도의회의원의 업무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기대는 높아지는 반면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은 증가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하고,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을 “정책지원관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정책지원관”으로, “직급”을 “자격·직급”으로 한다.

1. 시·도의회: 의원 정수
2.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제41조(정책지원관) ①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정책지원관을----- -----. 1. 시·도의회: 의원 정수 2.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② 정책지원관----- -----자격·직급----- ----- -----.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